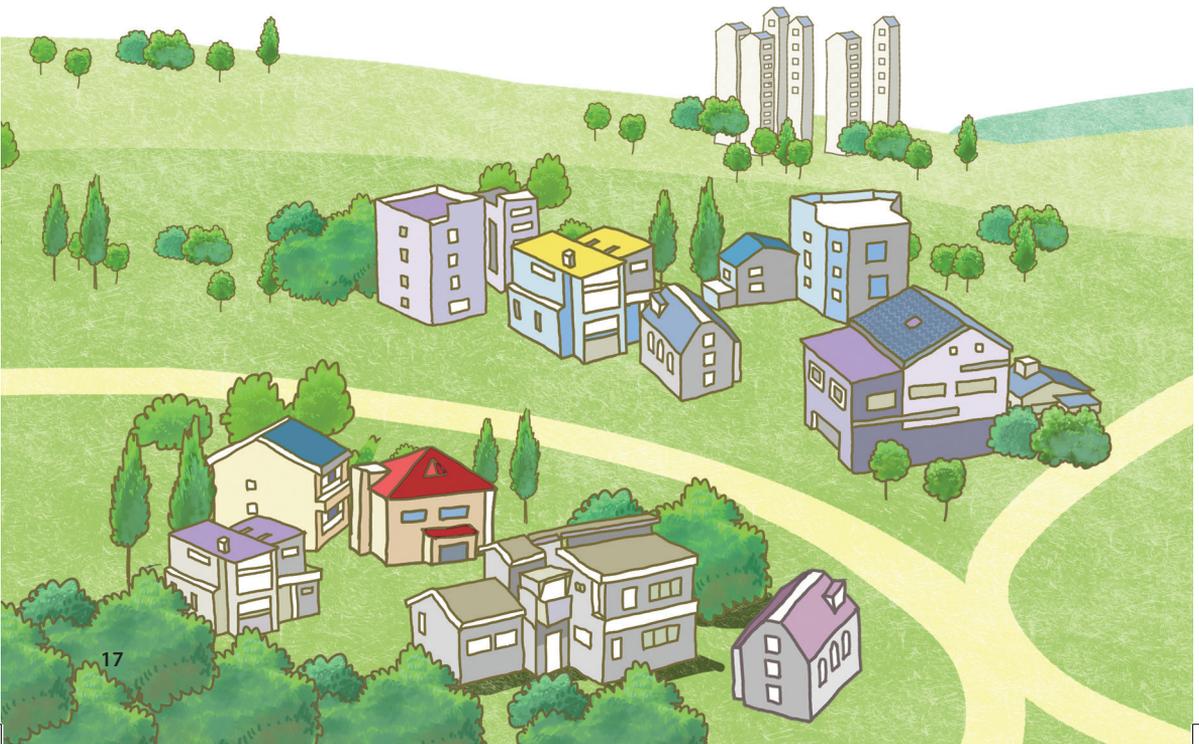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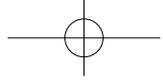
2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

안전한 건축물이란?

안전한 건축물이란 건축주와 설계자 및 시공자가 건축물을 지을 때 개인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서 안전 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켜 짓는 것을 말합니다.

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려면 방범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지어져야 하며 화재, 피난, 추락 등으로부터 안전하려면 관련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폭풍우, 눈, 추위, 더위와 같은 자연요소로부터 안전하려면 방수, 단열, 환기, 채광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려면 내진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.





이처럼 **안전한 건축물**은
인간의 삶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
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성능을
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어진
건축물을 말합니다.





5 착공신고

착공신고란?

건축물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은 설계도서를 토대로 사용자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관할 허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1) 착공신고 시 유의사항

- 설계계약서, 감리계약서, 시공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.
-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. 다만,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.
- 인접대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굴토 전 주변현황(균열상태)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
-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주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,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잠깐!

공사 시작 전, 반드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.

2) 행정절차





사례 1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가 완공된 경우



tip 착공신고는 단순히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고 공사를 착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착공하기를 바라는 것이며, 일정규모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, 특정공사사전신고, 건설안전기술지도계약 등 착공 전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착공신고 시에는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, 규격 등을 표기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2.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



사례 2 동별로 착공신고 가능 여부



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안전, 관리 등의 문제로 착공신고를 동별로 하지 않고 전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